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지방의회 보고 건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의결주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성주군의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활용하여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구하기 위함.

3. 성주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개요

○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성주군 전역, 약 A= 616.12㎢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8년, 목표연도 2028년

○ 내용적 범위

- 성주군 여건 분석 및 쇠퇴진단
- 도시재생 기본방향 설정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및 방향 설정
-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 방안

4.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03. : 성주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8. 05.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8. 07. : ‘18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신청(일반근린형)

○ 2018. 08. :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성주읍 1단계)

○ 2018. 11.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

○ 2018. 12.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국토교통부)

○ 2019. 02. :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성주군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

○ 2019. 04. :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20. 02. : ‘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성주읍 2단계)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본사업의 제시된 안건은 쇠퇴한 원도심을 사회·경제·문화·환경적으로 회복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저출산, 고령화 및 노후 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쇠퇴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 향후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뿐만 아니라, 주민 공청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함께 도시재생사업 추진전략에 따라 우리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아울러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참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주민이 체감 할 수 있고,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